|  |  |  |
| --- | --- | --- |
| **국가지적재산권 행정재심의 규칙**국가지적재산권국 제66호<국가지적재산권 행정재심의 규칙>이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텐리푸(田力普)2012년7월18일**제1장 총 칙** **제1조**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방지 및 시정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지적재산권의 의법 직권행사를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제2조**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국가지적재산권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여길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의 법제업무를 감당한 기구(이하 행정재심의기구라 함)는 구체적인 행정재심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직책을 수행한다. (1)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2) 유관부서 및 인원에 대한 조사 및 증거 수집, 관련 문서와 자료 열람(3) 구체적 행정행위의 적법 또는 적당여부를 심사(4) 동시에 신청한 행정배상 사항을 처리(5) 행정재심의 법률문서의 기안, 작성 및 발송(6)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안건에 대한 응소사항 처리(7) 행정재심의 결정의 집행 독촉　(8) 행정재심의, 행정응소안건의 통계업무와 중대 행정재심의 결정의 등록비치사항 처리(9) 행정재심의 업무처리 중에 발견한 문제를 연구하여 제때에 유관부문에 행정재심의 의견 혹은 건의서를 제출. 　　**제2장 행정재심의 범위 및 참가자****제4조** 이 규정 제5조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특허출원, 특허권 부여 관련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2)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집적회로도면설계 등기신청, 도면설계소유권 관련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3)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의위원회의 특허재심의, 무효 관련 절차결정에 불복할 경우(4)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특허대리관리 관련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5)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아래와 같은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2) 재심의 청구인이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 (3) 특허권자 혹은 무효선고청구인이 무효선고 청구에 대한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4) 특허권자 혹은 특허실시 강제허가의 특허허가대상자가 강제허가사용료 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5) 국제출원 신청인이 국가지적재산권국이 국제출원 수리단위, 국제검색단위, 국제초보심사단위로서 내린 결정에 불복할 경우(6)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신청인이 등록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7)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신청인이 재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8)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자가 배치설계 등록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9)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자, 비자발적허가 취득인이 비자발적허가 보수에 불복할 경우(10)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자, 권리침해 피고인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소유권침해분쟁 처리에 불복할 경우 (11)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행정재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제6조** 이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재심의 신청인으로 된다.구체적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그 권리 혹은 이익을 피해를 입은 기타 이익관계자는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제3자로 행정재심의에 참가할 수도 있다. **제7조** 재심의 신청인, 제3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정재심의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신청 및 수리****제8조**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게된 일자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가항력 혹은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전 항의 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일자부터 계속하여 계산한다. **제9조** 행정재심의 신청권리가 있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행정재심의를 제출할 수 없다.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여 행정재심의기구가 법에 따라 수리하였을 경우, 행정재심의 법정기한 내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후, 수리 전 또는 그 후에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안건수리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 **제10조** 행정재심의 신청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1) 재심의 신청인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신청인,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자 혹은 기타 이해관계자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행정재심의 요구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3) 행정재심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4) 법정 신청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행정재심의 신청은 행정재심의신청서 1식 2부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서면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그 행정문서 혹은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대리인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행정재심의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재심의 신청인의 성명 혹은 명칭, 통신주소, 연락전화(2) 구체적인 행정재심의 요구(3) 신청한 행정재심의의 주요사실 및 이유(4) 재심의 신청인의 사인 혹은 날인(5) 행정재심의 신청일자.**제13조** 행정재심의신청서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제작한 표준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신청서는 손으로 작성하거나 혹은 출력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재심의신청서는 우편, 팩스 혹은 직접제출 등 방식으로 행정재심의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부터 5일 내에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행정재심의 신청이 이 규정에 부합될 경우 수리하며, 재심의 신청인에게 수리통지서를 발송한다. 　(2) 행정재심의 신청이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보한다. (3) 행정재재심신청서가 이 규정의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재심의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며,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신청을 포기로 간주한다. **제4장 수리 및 결정****제16조**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유관부서와 인원에 대하여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인 혹은 제3자의 구두상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제17조**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일자부터 7일 내에 행정재심의신청서 부본을 유관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해당부서는 행정재심의신청서 부본을 접수한 일자부터 10일 내에 기존의 구체적 행정행위 유지, 취소 혹은 변경에 대한 서면 답변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당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할 때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답변의견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행정재심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심의 신청인, 제3자는 상기 서면 답변의견과 구체적 행정행위를 할 때 의거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비밀과 관련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18조** 재심의 신청인은 행정재심의 결정이 나기 전에 행정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하를 허락하는 경우 그 행정재심의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제19조** 행정재심의 기간에 구체적 행정행위는 원칙상 계속 진행한다.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구는 유관부서에 집행정지통지서를 발송하며, 동시에 재심의신청인 및 제3자에게 통지한다. **제20조** 행정재심의 안건의 심리는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을 의거로 한다. 　**제21조** 구체적 행정행위가 인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한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적당할 경우에는 기존의 결정을 유지한다. **제22조** 피신청인이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그 법정직책을 수행하도록 결정한다. **제23조** 구체적 행정행위가 아래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구체적 행정행위 취소 혹은 변경을 결정하거나 또는 그 구체적 행정행위의 불법을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주요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할 경우(2) 적용한 근거가 오류인 경우(3) 법적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4) 직권을 초월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5) 구체적 행정행위가 분명히 부당할 경우(6)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기존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한 경우.**제24조** 구체적 행정행위가 아래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실인정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나 분명히 부당하거나 혹은 적용한 근거에 틀린 경우(2) 사실인정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행정재심의 절차를 통해 사실이 규명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 　**제25조** 아래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행정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재심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재심의를 신청하여 행정재심의기구가 수리한 후 피신청인이 관련 법정직책이 없거나 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이미 법정직책을 이미 이행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2) 행정재심의기구가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후 그 신청이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제26조** 재심의 신청인은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때 동시에 행정배상청구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기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배상청구를 심사하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배상청구 내용을 포함시킨다. 　**제27조** 행정재심의 결정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일자부터 60일 내에 내려야 한다. 단,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재심의신청인과 제3자에 통보해야 한다. 연장 기한은 최장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행정재심의 결정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의 명의로 내릴 수 있다. 행정재심의결정 서류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행정재심의 전용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29조** 행정재심의 기간에 행정재심의기구에서 관련 행정행위가 불법이거나 사후처리가 필요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재심의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유관부서는 행정재심의의견서를 접수한 일자부터 60일 내에 그 행정불법행위를 시정했거나 또는 사후처리를 한 업무상황을 행정재심의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재심의기간에 행정재심의기구가 법률, 법규, 규정 시행에 보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재심의건의서를 작성하여 유관부서에 제도 및 행정 법 집행의 개선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기간 및 송달****제33조** 기간의 시작일자는 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만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이 끝난 후 첫 번째 날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이 규정 중의 “5일”, “7일”, “10일”은 근무일을 말하며, 휴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1조** 행정재심의결정서를 직접 송달한 경우 재심의 신청인이 송달증서에 사인한 일자를 송달일자로 한다. 행정재심의결정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일자부터 15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행정재심의의결서가 일단 송달되었다면 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재심의 신청인 혹은 제3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행정재심의결정서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동시에 신청인 혹은 제3자의 중국 내 통신주소에도 송달해야 한다.**제6장 부 칙****제33조**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외국의 기타 조직이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 행정재심의는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7월 25일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24호로 반포한 <국가지적재산권국 행정재심의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国家知识产权局行政复议规程**国家知识产权局第六十六号《国家知识产权局行政复议规程》已经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9月1日起施行。　局 长 田力普2012年7月18日**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防止和纠正违法或者不当的具体行政行为，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保障和监督国家知识产权局依法行使职权，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和《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实施条例》，制定本规程。　　**第二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国家知识产权局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依照本规程向国家知识产权局申请行政复议。　　**第三条** 国家知识产权局负责法制工作的机构(以下称“行政复议机构”)具体办理行政复议事项，履行下列职责：　　（一）受理行政复议申请；　　（二）向有关部门及人员调查取证，调阅有关文档和资料；　　（三）审查具体行政行为是否合法与适当；　　（四）办理一并请求的行政赔偿事项；　　（五）拟订、制作和发送行政复议法律文书；　　（六）办理因不服行政复议决定提起行政诉讼的应诉事项；　　（七）督促行政复议决定的履行；　　（八）办理行政复议、行政应诉案件统计和重大行政复议决定备案事项；　　（九）研究行政复议工作中发现的问题，及时向有关部门提出行政复议意见或者建议。**第二章 行政复议范围和参加人**　　**第四条** 除本规程第五条另有规定外，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　　（一）对国家知识产权局作出的有关专利申请、专利权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　　（二）对国家知识产权局作出的有关集成电路布图设计登记申请、布图设计专有权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　　（三）对国家知识产权局专利复审委员会作出的有关专利复审、无效的程序性决定不服的；　　（四）对国家知识产权局作出的有关专利代理管理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　　（五）认为国家知识产权局作出的其他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　　**第五条** 对下列情形之一，不能申请行政复议：　　（一）专利申请人对驳回专利申请的决定不服的；　　（二）复审请求人对复审请求审查决定不服的；　　（三）专利权人或者无效宣告请求人对无效宣告请求审查决定不服的；　　（四）专利权人或者专利实施强制许可的被许可人对强制许可使用费的裁决不服的；　　（五）国际申请的申请人对国家知识产权局作为国际申请的受理单位、国际检索单位和国际初步审查单位所作决定不服的；　　（六）集成电路布图设计登记申请人对驳回登记申请的决定不服的；　　（七）集成电路布图设计登记申请人对复审决定不服的；　　（八）集成电路布图设计权利人对撤销布图设计登记的决定不服的；　　（九）集成电路布图设计权利人、非自愿许可取得人对非自愿许可报酬的裁决不服的；　　（十）集成电路布图设计权利人、被控侵权人对集成电路布图设计专有权侵权纠纷处理决定不服的；　　（十一）法律、法规规定的其他不能申请行政复议的情形。　　**第六条** 依照本规程申请行政复议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是复议申请人。　　在具体行政行为作出时其权利或者利益受到损害的其他利害关系人可以申请行政复议，也可以作为第三人参加行政复议。　　**第七条** 复议申请人、第三人可以委托代理人代为参加行政复议。**第三章 申请与受理**　　**第八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国家知识产权局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自知道该具体行政行为之日起60日内提出行政复议申请。　　因不可抗力或者其他正当理由耽误前款所述期限的，该期限自障碍消除之日起继续计算。　　**第九条** 有权申请行政复议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人民法院已经依法受理的，不得向国家知识产权局申请行政复议。　　向国家知识产权局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机构已经依法受理的，在法定行政复议期限内不得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国家知识产权局受理行政复议申请后，发现在受理前或者受理后当事人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并且人民法院已经依法受理的，驳回行政复议申请。　　**第十条** 行政复议申请应当符合下列条件：　　（一）复议申请人是认为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专利申请人、专利权人、集成电路布图设计登记申请人、集成电路布图设计权利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　　（二）有具体的行政复议请求和理由；　　（三）属于行政复议的范围；　　（四）在法定申请期限内提出。　　**第十一条** 申请行政复议应当提交行政复议申请书一式两份，并附具必要的证据材料。被申请复议的具体行政行为以书面形式作出的，应当附具该文书或者其复印件。　　委托代理人的，应当附具授权委托书。　　**第十二条** 行政复议申请书应当载明下列内容：　　（一）复议申请人的姓名或者名称、通信地址、联系电话；　　（二）具体的行政复议请求；　　（三）申请行政复议的主要事实和理由；　　（四）复议申请人的签名或者盖章；　　（五）申请行政复议的日期。　　**第十三条** 行政复议申请书可以使用国家知识产权局制作的标准表格。　　行政复议申请书可以手写或者打印。　　**第十四条** 行政复议申请书应当以邮寄、传真或者当面递交等方式向行政复议机构提交。　　**第十五条** 行政复议机构自收到行政复议申请书之日起5日内，根据情况分别作出如下处理：　　（一）行政复议申请符合本规程规定的，予以受理，并向复议申请人发送受理通知书；　　（二）行政复议申请不符合本规程规定的，决定不予受理并书面告知理由；　　（三）行政复议申请书不符合本规程第十一条、第十二条规定的，通知复议申请人在指定期限内补正；期满未补正的，视为放弃行政复议申请。**第四章 审理与决定**　　**第十六条** 在审理行政复议案件过程中，行政复议机构可以向有关部门和人员调查情况，也可应请求听取复议申请人或者第三人的口头意见。　　**第十七条** 行政复议机构应当自受理行政复议申请之日起7日内将行政复议申请书副本转交有关部门。该部门应当自收到行政复议申请书副本之日起10日内提出维持、撤销或者变更原具体行政行为的书面答复意见，并提交当时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期满未提出答复意见的，不影响行政复议决定的作出。　　复议申请人、第三人可以查阅前款所述书面答复意见以及作出具体行政行为所依据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但涉及保密内容的除外。　　**第十八条** 行政复议决定作出之前，复议申请人可以要求撤回行政复议申请。准予撤回的，行政复议程序终止。　　**第十九条** 行政复议期间，具体行政行为原则上不停止执行。行政复议机构认为需要停止执行的，应当向有关部门发出停止执行通知书，并通知复议申请人及第三人。　　**第二十条** 审理行政复议案件，以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为依据。　　**第二十一条** 具体行政行为认定事实清楚，证据确凿，适用依据正确，程序合法，内容适当的，应当决定维持。　　**第二十二条** 被申请人不履行法定职责的，应当决定其在一定期限内履行法定职责。　　**第二十三条** 具体行政行为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决定撤销、变更该具体行政行为或者确认该具体行政行为违法，并可以决定由被申请人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　　（一）主要事实不清，证据不足的；　　（二）适用依据错误的；　　（三）违反法定程序的；　　（四）超越或者滥用职权的；　　（五）具体行政行为明显不当的；　　（六）出现新证据，撤销或者变更原具体行政行为更为合理的。　　**第二十四条** 具体行政行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决定变更该具体行政行为：　　（一）认定事实清楚，证据确凿，程序合法，但是明显不当或者适用依据错误的；　　（二）认定事实不清，证据不足，经行政复议程序审理查明事实清楚，证据确凿的。　　**第二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驳回行政复议申请并书面告知理由：　　（一）复议申请人认为被申请人不履行法定职责而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机构受理后发现被申请人没有相应法定职责或者在受理前已经履行法定职责的；　　（二）行政复议机构受理行政复议申请后，发现该行政复议申请不符合受理条件的。　　**第二十六条** 复议申请人申请行政复议时可以一并提出行政赔偿请求。行政复议机构依据国家赔偿法的规定对行政赔偿请求进行审理，在行政复议决定中对赔偿请求一并作出决定。　　**第二十七条** 行政复议决定应当自受理行政复议申请之日起60日内作出，但是情况复杂不能在规定期限内作出的，经审批后可以延长期限，并通知复议申请人和第三人。延长的期限最多不得超过30日。　　**第二十八条** 行政复议决定以国家知识产权局的名义作出。行政复议决定书应当加盖国家知识产权局行政复议专用章。　　**第二十九条** 行政复议期间，行政复议机构发现相关行政行为违法或者需要做好善后工作的，可以制作行政复议意见书。有关部门应当自收到行政复议意见书之日起60日内将纠正相关行政违法行为或者做好善后工作的情况通报行政复议机构。　　行政复议期间，行政复议机构发现法律、法规、规章实施中带有普遍性的问题，可以制作行政复议建议书，向有关部门提出完善制度和改进行政执法的建议。**第五章 期间与送达**　　**第三十条** 期间开始之日不计算在期间内。期间届满的最后一日是节假日的，以节假日后的第一日为期间届满的日期。本规程中有关“5日”、“7日”、“10日”的规定是指工作日，不含节假日。　　**第三十一条** 行政复议决定书直接送达的，复议申请人在送达回证上的签收日期为送达日期。行政复议决定书邮寄送达的，自交付邮寄之日起满15日视为送达。　　行政复议决定书一经送达，即发生法律效力。　　**第三十二条** 复议申请人或者第三人委托代理人的，行政复议决定书除送交代理人外，还应当按国内的通讯地址送交复议申请人和第三人。**第六章 附 则**　　**第三十三条** 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向国家知识产权局申请行政复议，适用本规程。　　**第三十四条** 行政复议不收取费用。　　**第三十五条** 本规程自2012年9月1日起施行。2002年7月25日国家知识产权局令第二十四号发布的《国家知识产权局行政复议规程》同时废止。 |